

제320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17 호

국회 사무처

2013년 12월 1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문화기본법안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
3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33.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된 안건

- o 위문금 각출의 건(의장 제의) 4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 · 이철우 · 김태원 · 정두언 · 서상기 · 이병석 · 조원진 · 김세연 · 강은희 · 이에리사 의원 발의) 4
-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함진규 · 박범계 · 강은희 · 권성동 · 권은희 · 金永柱 · 박민식 · 여상규 · 이진복 · 이철우 · 홍일표 · 김관영 · 김성곤 · 서영교 · 원혜영 · 조정식 · 황주홍 의원 발의) 4
-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박남춘 · 김영록 · 남인순 · 정성호 · 임수경 · 이석현 · 심재권 · 김민기 · 조경태 · 도종환 · 이연주 의원 발의) 4
-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
- 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
- 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박홍근 · 김현미 · 안민석 · 설훈 · 양승조 · 유성엽 · 강기정 · 인재근 · 정진후 · 김용익 · 김태년 · 이인영 · 유기홍 의원 발의) 4
-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박남춘 · 김영록 · 남인순 · 임수경 · 이석현 · 심재권 · 김민기 · 정성호 · 조경태 · 도종환 · 이연주 · 이윤석 의원 발의) 4
-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박성호 · 김태원 · 송영근 · 유승우 · 서상기 · 김우남 · 황우여 · 이낙연 · 박인숙 · 이에리사 의원 발의) 4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
-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
-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 · 박성호 · 김희국 · 홍지만 · 김세연 · 여상규 · 정희수 · 박대동 · 박상은 · 심학봉 · 김명연 · 이학재 · 최봉홍 · 이재영 · 윤재옥 · 염동열 의원 발의) 6
-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
- 1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
-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김성곤 · 민홍철 · 박남춘 · 배기운 · 윤관석 · 이상민 · 전정희 · 정성호 · 홍종학 의원 발의) 7
- 16. 문화기본법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 · 이학재 · 윤관석 · 이한성 · 정세균 · 김세연 · 정의화 · 서상기 · 이만우 · 서용교 · 문정림 · 정병국 · 윤진식 · 이재오 의원 발의) 7
-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 · 김성주 · 주승용 · 심재권 · 강기정 · 김영록 · 김우남 · 정성호 · 양승조 · 최규성 의원 발의) 8
- 1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고희선 · 이상일 · 송영근 · 이만우 · 최봉홍 · 황영철 · 이에리사 · 김영록 · 김을동 · 강은희 · 이노근 · 김현숙 · 李宰榮 · 박인숙 · 민병주 · 황주홍 · 김춘진 · 김희정 · 이자스민 · 최규성 의원 발의) 9
- 1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황영철 · 이한성 · 송광호 · 金永柱 · 문정림 · 박상은 · 김동완 · 류지영 · 김진태 · 전해철 의원 발의) 9
- 2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관영 · 노영민 · 박기춘 · 서영교 · 윤관석 · 은수미 · 진성준 · 장하나 · 홍영표 의원 발의) 10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이명수 · 이이재 · 이장우 · 함진규 · 이현승 · 김태흠 · 김한표 · 이완영 · 김희국 · 박인숙 의원 발의) 11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민식 · 민현주 · 권은희 · 이우현 · 김세연 · 이운룡 · 박원석 · 김을동 · 조명철 의원 발의) 11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1

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1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1

28.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4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함진규 · 박범계 · 강은희 · 권성동 · 권은희 · 金永柱 · 박민식 · 여상규 · 이진복 · 이철우 · 홍일표 · 김관영 · 김성곤 · 서영교 · 원혜영 · 조정식 · 황주홍 의원 발의) 15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31.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 · 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안민석 · 정희수 · 배재정 · 배기운 · 이만우 · 김제남 · 한정애 · 오영식 · 전정희 · 박수현 · 윤관석 · 진성준 · 박홍근 의원 발의) 15

3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6

33.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 특별위원장 제출) 17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7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金永柱 · 박성효 · 박덕흠 · 이재오 · 윤재옥 · 김기선 · 한기호 · 이운룡 · 김진태 · 나성린 · 이이재 의원 발의) 17

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8

3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 · 이명수 · 이노근 · 이종진 · 이현승 · 함진규 · 강석호 · 안효대 · 김을동 · 정문헌 · 유승우 · 이윤석 · 이종훈 · 홍문종 · 조현룡 · 박인숙 의원 발의) 18

3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

 o 5분자유발언 19

(14시25분 개의)

○부의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세균 의원, 간사에 김재원 의원, 문병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로 농어업 회의소 법안 등 125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으로 부터 동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문금 각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7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문금 각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 장병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2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각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이철우·김태원·정두언·서상기·이병석·조원진·김세연·강은희·이에리사 의원 발의)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金永柱·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박남춘·김영록·남인순·정성호·임수경·이석현·심재권·김민기·조경태·도종환·이연주 의원 발의)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박홍근·김현미·안민석·설훈·양승조·유성엽·강기정·인재근·정진후·김용익·김태년·이인영·유기홍 의원 발의)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박남춘·김영록·남인순·임수경·이석현·심재권·김민기·정성호·조경태·도종환·이연주·

이윤석 의원 발의)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박성호·김태원·송영근·유승우·서상기·김우남·황우여·이낙연·박인숙·이에리사 의원 발의)

(14시29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염동열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태백·영월·평창·정선 출신 염동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시설 등이 축소되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오히려 열악해지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교비회계에서 전출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교원 겸직을 금지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입법 조치입니다.

다음 김태년 의원, 박성호 의원, 신계륜 의원, 이군현 의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중학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위헌결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학교운영 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둘째, 보건의료사자격을 가지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교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립대학법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하게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를 국립학교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약칭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세연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카이스트(KAIST)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은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교육, 지식재산권 등을 법률에 명시하며 산학협력단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대학법인의 예·결산 공시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다른 국립학교와 구별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설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다른 국립학교와 같이 교육부령에 따르고, 학교회계에 대하여는 다른 국립학교와 달리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부설학교 교직원의 임면권은 총장이 행사하되 학교법인과 같이 사립학교법상의 관련 조문을 준수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의 예·결산 공시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교육·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 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1인 중 찬성 249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3인, 기권 19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2인, 반대 5인, 기권 2인
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9인, 기권 2인으로서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8인, 기권 4인으로서 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0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서 국
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6인, 기권 2인으로서 장
에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6인, 기권 2인으로서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류성걸·박성호·김희국·홍지만·김세연·
여상규·정희수·박대동·박상은·심학봉·
김명연·이학재·최봉홍·이재영·윤재욱·
염동열 의원 발의)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김성곤·민홍철·박남춘·배기운·윤관석·이상민·전정희·정성호·홍종학 의원 발의)

16. 문화기본법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

이학재·윤관석·이한성·정세균·김세연·정의화·서상기·이만우·서용교·문정림·정병국·윤진식·이재오 의원 발의)

(14시46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10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문화기본법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윤관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림 의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에 따라 상담,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둘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셋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등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밀 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둘째, 평생교육기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 별도로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셋째,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 공연장 설치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하위 법령 위임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에 “전시”를 추가하고, “방송 또는 전송”을 “공중송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길정우 의원, 박창식 의원, 최민희 의원,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규정하고,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 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예사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만 학예사의 등급을 간소화하는 내용은 기존 학예사의 기대 이익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4등급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안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범부

처적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 분야의 다양한 정책 대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으며, 정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 방법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1인 중 찬성 251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5인 중 찬성 252인, 기권 3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2인 중 찬성 249인, 기권 3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7인 중 찬성 253인, 기권 4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6인 중 찬성 252인, 기권 4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4인 중 찬성 249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기본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성주·주승용·심재권·강기정·김영록·김우남·정성호·양승조·최규성 의원 발의)

1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고희선 · 이상일 · 송영근 · 이만우 · 최봉홍 · 황영철 · 이에리사 · 김영록 · 김을동 · 강은희 · 이노근 · 김현숙 · 李宰榮 · 박인숙 · 민병주 · 황주홍 · 김춘진 · 김희정 · 이자스민 · 최규성 의원 발의)

1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황영철 · 이한성 · 송광호 · 金永柱 · 문정림 · 박상은 · 김동완 · 류지영 · 김진태 · 전해철 의원 발의)

(14시58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17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배기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배기운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나주·화순 출신 민주당 배기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현행 관측사업의 종류에 임업관측을 추가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청장이 임업관측 실시의 주체가 되도록 임업관측사업에 대하여 위임규정에 산림청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력관리 대상을 현행 소 및 쇠고기에서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법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돼지를 농장 단위로 이력관리하기 위한 농장 식별번호와 돼지사육 현황 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도축업자의 신고사항에 경매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도 지속 가능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독도 관련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독도 지속 가능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한정하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5인 중 찬성 245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8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4인, 기권 5인으로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5시06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20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이원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입니다.

노영민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능형전력망 확산 등에 따른 전기 설비의 세분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기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전기 설비와 지능형전력망 전기 설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이원욱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노영민·박기춘·서영교·윤관석·은수미·진성준·장하나·홍영표 의원 발의)

(15시09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21항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한정애**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물질약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등을 공고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구매 요청한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체 구매토록 하여 녹색제품의 이용 확대와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또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8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4인 중 찬성 236인, 반대 3인, 기권 5인
 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이명수 · 이이재 · 이장우 · 함진규 · 이현승 ·
 김태흠 · 김한표 · 이완영 · 김희국 · 박인숙
 의원 발의)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민식 · 민현주 · 권은희 ·
 이우현 · 김세연 · 이운룡 · 박원석 · 김을동 ·
 조명철 의원 발의)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교통위원장 제출)

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14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2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25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이노근**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구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
 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
 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
 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사
 회복지시설의 확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일
 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
 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
 운용 방법 등의 위반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를 정지할 때 그 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
 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같이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
 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병석 부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이재 의원안, 김태원 의원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동차 매매업
 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매매
 알선 수수료 등을 사전 고지하고 사후에 정산토
 록 하며, 자동차 매매업자가 거짓 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기춘 의원안, 이현재
 의원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한 것으로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국고의 지원 비
 율은 사업시행주체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평한 분담 및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본인 안, 이철우 의원안 및 정부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
 진 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시켜 내진 성능

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며,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 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하면서 그 기산일을 관리처분 인가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단축하여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4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5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5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5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2인 중 찬성 231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철우 의원 등 3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이노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과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막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0% 이상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비용은 예외사항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금청산 시기 조정 시 이미 현금청산을 계획하고 있는 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조기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비사업의 지연·중단으로 다수의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출구 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반면 주민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

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지자체와 관련 협회, 업계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많이 들어 있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투표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부의장 박병석**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의장의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부의장 박병석** 박병석입니다.

(웃음소리)

○**김미희 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의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저는 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첫 번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와 있는 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을 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중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하한선 없이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 소형임대주택 건설의 무비용을 0%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대책이라고 하지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아무리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형임대주택 건설의 무비용을, 의무비용을 0%로 할 경우에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방금 말씀하신 수정안에도 전혀 고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다 같이 이런 부분이,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법 개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둘 다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대안 중에서는, 대안을 보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액 산정 시 배제되는 항목에 현행의 생산자물가 상승률분 외에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 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에서는 약간 개선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역시나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이것이 완전히 고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 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현금청산 금액 등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을 증액하려고 할 때 최소한의 조합원 등의 동의 과정을 구하지 않을 경우에 도시정비사업조합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합 임원의 비리와 횡령 문제가 대두되면서 뉴타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의 비민주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행대로 물가상승률분을 제외한 정비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어쨌든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개정안처럼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늦추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현금청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안에는 다만 이것을 적용하는 시기만 조절했을 뿐 역시나 이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안이든 수정안이든 부동산 침체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뉴타운 재개발로 계속되고 있는 지금 소

형 임대주택을 줄이거나 또 정비사업 추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안과 수정안을 모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표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8인, 기권 31인으로서 이철우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5시34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8항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길정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길정우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길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제남 의원, 길정우 의원, 김태원 의원, 김상훈 의원, 강은희 의원, 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으로서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결과에 대한 언론 등의 공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발생 은폐가 드러나거나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의해서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가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 주기별 건강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 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확대, 승격시켜서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또 입법심의관 및 입법조사관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길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1인 중 찬성 227인, 기권 4인으로서 여

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金永柱·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9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9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의사일정 제30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민기**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을 출신 김민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처와 청의 별정직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현재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차장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부칙 경과 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145인, 반대 49인, 기권 31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안민석·정희수·배재정·배기운·이만우·김제남·한정애·오영식·전정희·박수현·윤관석·진성준·박홍근 의원 발의)

(15시43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1항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안민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는 도난품 논란이 일고 있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투구와 갑옷을 고종이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은 일제강점 당시 일본인 사업가 오쿠라에 의해서 약탈된 황실 문화재

로 추정됩니다. 황실 문화재는 개인 간에 거래될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조선대원수 투구와 갑옷은 도쿄 국립박물관 지하수장고에 갇혀 있던 중 지난 3년간 한국 측 민간인들의 끈질긴 요구로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공개 전시되고 있습니다. 23일, 앞으로 10여 일 후 공개 전시가 끝나면 다시 지하수장고로 갇히게 될 운명이고, 자칫하면 우리 민족혼과 국권의 상징인 조선대원수 갑옷과 투구가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23일 전시가 끝나는 즉시 일본 정부는 조선대원수 투구와 갑옷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도 향후 협상에 당당하게 문화주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성실한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상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따라서 불법 취득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으로 즉시 반환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한 분의 반대나 기권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한일 역사와 국민 앞에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들의 문화주권 의지와 애국심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7인 중 찬성 227인으로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49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2항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상민**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국내에서 일일 환경기준을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약 2만 명, 폐질환 발생자는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1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며 또한 현재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비롯한 유관 사업의 전담인력 증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예·경보 체계의 대폭 확충,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 강화 등 국내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으로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국무총리실산하 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사건의진상규명을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5시53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3항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대리 권성동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은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관련자들이 각자의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통해 처벌되었으므로 이 특위 활동을 2013년 12월 10일자로 종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32인, 반대 58인, 기권 28인으로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5시56분)

○부의장 박병석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황영철·金永柱·박성효·박덕흠·이재오·윤재옥·김기선·한기호·이운룡·김진태·나성린·이이재 의원 발의)

(15시57분)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황영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조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지방

소비세율 비중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시다만 여야 의견 조정을 통해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를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고,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1%가 되도록 변경하는 등 기타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야 합의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1인, 기권 14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5시59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5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성린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부산 진구갑 출신 나성린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조금 전에 의결해 주셨듯이 취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4년부터 곧바로 11%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이명수·이노근·이종진·이현승·함진규·강석호·안효대·김을동·정문헌·유승우·이윤석·이종훈·홍문종·조현룡·박인숙 의원 발의)

3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6시01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6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이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이이재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이재 의원입니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주택단지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인과 전해철·김상희·이노근·정희수·심재철·주승용·김태원·이명수·김경협·이현승·함진규·성완중·박병석·강기윤·김춘진·윤후덕 의원님

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민의 노력 의무, 관리주체의 차단 요청 및 층간소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허용하면서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근거 등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1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4인, 반대 6인, 기권 12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16시07분)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세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야 대표회담의 합의 정신에 기초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여망이며, 지금 시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지난 총선과 대선 시기 국정원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단죄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국민 모두가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저는 국정원을 현대적이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은 예산과 인력에 비해 별로 유능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딴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본연의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국내 정보 수집기능 개혁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지켜야 합니다. 국정원법 제3조1항 직무 범위를 보면 국정원은 국내 정보에 있어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원은 법정 5개 직무를 넘어서 광범위한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여야 지도자에 관한 사항, 정치 쟁점이나 쟁점 정책에 대한 여론이나 동향을 수집하는 것은 국정원의 임무가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정보 파트가 대폭 축소되어야 되고,

IO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와 시행령에 해당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공심리전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을 할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 국회의 통제를, 특히 예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기밀 유지라는 업무 성격을 내세워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정원의 예산과 업무에 대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강화하면 국정원 조직이나 안보상황이 노출되고 비밀주의에 위배된다고 발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비밀 누설하는 것이고,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것입니까?

미국도 의회가 중앙 CIA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를 하고 있고, 중앙정보국이 비밀공작을 할 때도 사전과 사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런 수준의 통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정보누설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됩니다. 국회 정보위원들이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했을 때는 처벌하도록 법조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 보니까 국정원 정보를 임의로 누설하고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수사권 이관 문제 또 내부공익제보자의 보호 문제 등 많은 의제가 있습니다. 또 부당한 감청을 처벌하는 문제 또 정치관여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조직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정보기관 본연의 위치로 돌려놓자

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어렵게 국정원개혁특위를 합의했습니다. 어렵게 개혁특위가 합의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정쟁 때문에 민생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개입 진상은 특검을 통해 맡기고 여야는 민생 문제에 전념하자고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제안은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보통 그리고 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책동이 연이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암담하며 헌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생명이 위협하고 대대손손 병에 걸린다고 선동하고 호도하여 유모차와 초등학생까지 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국정을 혼란시켰던 광우병 정국의 그 혼란함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사망한 사람도 없고 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없으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선동하고 유포한 사람들은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결국 허위사실로 국민을 호도한 그 주체세력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피켓을 들고 대통령의 사퇴와 대통령보궐선거를 주장하고, 양승조 의원은 34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을 상기시키며 암살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우리 국민의 선진역량을 무시하고 국민을 선동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몰지각하고 치졸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지난 달 18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국회의 권위와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망각한 채 냉랭한 태도와 비웃음과 'X'자 마스크를 쓴 채 연설을 듣고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국회 현관 앞에서 민주당 의원과 경찰 간에 유혈난투극이 벌어졌고 대통령 차량이 국회 정문을 나가자마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왜곡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야!」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헌정사에 또 있었나 묻고 싶습니다.

(「왜곡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거예요! 들어가요!」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국회를 떠나 서울시청 앞 광장의 천막당사에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선량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선동하여 국정을 흔들며 대한민국의 사회적 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야!」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문재인 의원과 박창신 신부는 대선 불공정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그만하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을 누가 하는 거야, 자꾸!」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한 것으로 우리 국민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의 선택을 부정하고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이 장하나·양승조 두 사람의 신념이라면 헌법과 선진화법에 의해 윤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두 사람에 대한 제명에 대한 조치를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장내 소란)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잖아!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에서 다시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의 결과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발언과 행동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장하나·양승조 두 사람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아야 하며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새누리당이나 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해, 나와서. 입만 갖고 하지 말고, 나와서.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서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범무

부는 이 조항을 문제 삼아서 정당해산 사유로 삼았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민영화하지 말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어떻게 정당해산 사유가 되겠습니까? 사회에 꼭 필요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도로, 항만 등과 같은 기간산업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국영 체제나 공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진보정당들은 당 정책으로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진보정당이 활동하는 세계 대다수 나라들의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전 9시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분할 법인 설립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외국 자본과 역외로 돈을 빼돌려서 외국자본으로 행세하는 자,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철도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면 결국은 외국자본이 알짜배기 우리나라 기업을 거저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앞길을 닦기 위해서 밀실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민영화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조달시장이 55조 원 규모가 됩니다. 이번 조달협정 개정안으로 중앙기관 7군데, 지방기관 52군데, 공공기관 도시철도 7군데가, 공공부문이 개방됩니다. 철도도 결국 민영화의 수준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4대강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국민을 속였지만 결국 거짓말임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도 결국은 거짓말로 드러날 것입니다. 은밀하게 밀실에서 국민도 모르게 추진하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그냥 두고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철도노동자들은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정부는 철도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4356명을 직위해제 하고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187명을 고소·

고발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박근혜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포정치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공포정치야말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선공약으로 철도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했던 그때의 공약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절차도 무시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경제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정작 프랑스는 WTO에 우리나라처럼 비준수락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먼저 비준수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인들에게 박수받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4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광립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영표 홍의홍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5인)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기권 의원(7인)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유은혜 이상민 정진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39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 원 식	우 윤 근	유 기 흥	유 대 운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회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이 만 우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민	김 영 주	金 永 柱	김 영 환	김 용 익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윤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김 정 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구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임 내 현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욱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두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영 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진 영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봉 흥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최 원 식	최 재 성	하 태 경	한 기 호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현 영 희	홍 문 중	홍 영 표	홍 의 락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홍 의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신 경 민	신 계 룡	신 기 남	신 동 우
황 우 여	황 주 흥	황 진 하		신의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반대 의원(3인)

강 창 일 노 영 민 임 수 경

기권 의원(20인)

강 기 윤	김 성 곤	김 용 태	김 중 훈
김 태 호	김 현 숙	박 남 춘	박 대 동
서 병 수	송 광 호	신의진	심 재 철
유 기 준	유 일 호	은수미	李 宰 榮
이 진 복	진 성 준	최 민 희	추 미 애

(신의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39인, 기권 의원 20인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52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회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 永 柱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림
신 경 민	신 계 룡	신 기 남	신 동 우
신의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중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은수미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李 宰 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5인)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기권 의원(2인)
 안규백 현영희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이종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60인)

장기윤	장기정	장길부	장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김제남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260인, 기권 의원 1인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5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후덕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4인)

은수미 전순옥 한정애 홍의락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5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완구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윤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채익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학재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현승 이현재
 이한성 이혜찬 이현수 장병완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해철
 장윤석 전병헌 전하진 정성호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청래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명
 정호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10인)
 강동원 김경협 김기식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전순옥
 정진후 홍익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9인)

찬성 의원(267인)

장기윤 장기정 장길부 장석호
 장석훈 장은희 장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중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설 훈 서 성 완 서 손 인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서 신 경
 신 경 민 신 계 룬 신 기 남 립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신 동 우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채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에 리 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자 스 민 이 장 우 이宰 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순 옥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흥 문 중 흥 영 표 흥 의 락
 흥 익 표 흥 일 표 흥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흥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강 동 원 김 관 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66인)

강 기 윤 강 석 호 강 석 훈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권 성 강 권 은 강 창 일
 경 대 수 경 관 영 김 광 립 김 정 우
 김 경 협 김 기 준 김 기 현 김 기 선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승 남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흙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채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에 리 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자 스 민 이 장 우 이宰 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순 옥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흥 문 중 흥 영 표 흥 의 락
 흥 익 표 흥 일 표 흥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흥 황 진 하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김노영	김철대	남도환	남류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李宰榮	이재오	이종결	이종진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호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과현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신의진	신장용	신학봉	심상정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안덕수	안민석	안중범	안철수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황주홍	황진하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기권 의원(2인)

김제남 박덕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6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결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심재철 한기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5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세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25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용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유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채익
 이주영 이진복 이학재 이한구
 이철우 이춘석 이현재 인재근
 이한성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호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3인)
 김상민 김성곤 이목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4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金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창식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정몽준,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우상호, 우원식, 유대운, 유성엽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은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황진하,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재옥, 이노근, 이병석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운룡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완영, 이용섭, 이이재, 이인영, 이재오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원욱, 이윤석, 李宰榮, 이주영, 이철우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이재, 이종훈, 이채익, 이한성, 임내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인재근, 장윤석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종훈, 이찬열, 이한구, 전병헌, 전해철
 이진복, 이찬열, 이학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정병국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병완, 장병완, 정문헌, 정문헌
 임수경, 장병완, 장병완, 장병완, 장병완, 장병완, 장병완, 장병완
 전순옥,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갑윤,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기권 의원(3인)

김성곤, 이한구, 한기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5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재연
 김장실, 김재경, 김제남, 김진표
 김재윤, 김진태, 김태호, 김한표
 김종훈, 김태원, 김학용, 김희국
 김태년, 김태흠, 김희선, 김희국
 김현숙,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대운, 유성엽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은혜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유인태,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명희,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윤후덕,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완구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훈, 이주영, 이철우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한성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임내현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장윤석
 임수경, 장병완, 장병완, 장병완
 전순옥,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갑윤, 정몽준, 정몽준, 정몽준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연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현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5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기권 의원(3인)

김성곤 이한구 추미애
 (장윤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54인, 기권 의원 3인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25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훈성 완종림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은수미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종진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성찬 김희선 유승민 이장우

○문화기본법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5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언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3인)

심재철 한기호 한정애
 (김성태·신동우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251인, 기권 의원 3인임)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5인)

강기운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중태 김중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상은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효
 박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룡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태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유기 준 유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6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중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홍 철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흙

반대 의원(1인)

주 호 영

기권 의원(1인)

안 민 석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4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흥 철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배 기 윤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李宰榮	이 재 오
이 중 걸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흥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박 흥 근	서 용 교	신 동 우	유 인 태
이 찬 열			

○전기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5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우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5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우윤근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윤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자스민 이 장 우
 李 宰 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재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욱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식 최 경 환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한 기 호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유 승 우

기권 의원(2인)

강 기 윤 정 병 국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속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변 재 일 부 과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성 완 종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룡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종 범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유 원 식 유 윤 근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욱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윤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자스민 李 宰 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재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욱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식 최 경 환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한 기 호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35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 永 柱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3인)
 강기윤 권성동 한기호
기권 의원(6인)
 심재철 안철수 이장우 이한구
 현영희 황영철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35인, 기권 의원 6인임)

유승우 유은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욱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영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19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백균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기권 의원(15인)
 강기윤 김기준 김성주 김현미
 남인순 배재정 안철수 우원식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진선미
 진성준 홍의락 홍익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윤 강기정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이목희 이종걸 인재근 전순옥
 노영민 노응래 류성걸 류지영 정진후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홍의락 홍익표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최민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명재 의원 209인, 기권 의원 26인임)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주영
 이재오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진복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춘석 이현승 이현재 임내현
 이한성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임수경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전정희 정문헌 정병국 정수성
 정몽준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정의화 정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경태 조승용 주영순 주호영
 조현룡 최경환 최봉홍 최원식
 진영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최재천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현영희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26인)

강동원 김상민 김상희 김제남
 김태년 김현미 남인순 도종환
 박원석 박혜자 배재정 서기호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은수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40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춘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중태 김중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응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영석 윤재욱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류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백근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성완중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중범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영석 윤재욱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결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한구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인재근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해철
 전병헌 전정희 정몽준 정병국
 정갑윤 정성호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강석훈

기권 의원(1인)

유승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30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결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한구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인재근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정몽준 정병국
 정갑윤 정성호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 주 흥 황 진 하
반대 의원(2인)

강 석 훈 안 홍 준
기권 의원(10인)

강 기 윤 강 창 일 김 민 기 민 병 주
 배 재 정 오 영 식 유 승 희 이 목 희
 전 순 옥 진 성 준
 (민병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30인, 기권 의원 10인임)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의 화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8인)

김 기 식 김 미 희 김 선 동 김 영 록
 김 재 연 김 제 남 박 원 석 배 재 정
 서 영 교 오 병 윤 우 원 식 은 수 미
 이 상 규 정 진 후 진 선 미 진 성 준
 한 명 숙 홍 영 표

기권 의원(31인)

강 기 윤 김 민 기 김 성 곤 김 성 주
 金永柱 김 윤 덕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현 미 남 인 순 박 주 선 박 홍 근
 배 기 운 서 기 호 신 경 민 신 장 용
 심 상 정 안 철 수 오 영 식 유 승 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용 섭 이 중 결
 이 진 복 임 수 경 정 청 래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홍 의 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180인)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성 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범 계 박 상 은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용 교 성 완 종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종 범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제 세 우 상 호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성 업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강 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9인)

강 기 윤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립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진병헌	진순옥	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조진선	주진성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성주 이장우

(김제남·서병수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229인, 기권 의원 2인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143인)

강기운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찬	김세연	김영우	金永柱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명재	박병석	박상은	박완주
박주선	박창식	백균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립
신동우	신의진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우상호	유기홍
유승민	유승우	유일호	유재중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병완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영
최경환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51인)

강 동 원 김 관 영 김 기 식 김 기 준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제 남
 김 현 미 남 인 순 박 기 춘 박 범 계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서 영 교
 신 경 민 신 학 용 심 상 정 안 규 백
 양 승 조 우 원 식 유 은 혜 윤 관 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상 직 이 윤 석
 이 인 영 이 학 영 인 재 근 임 수 경
 정 진 후 정 청 래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홍 영 표 홍 익 표

기권 의원(31인)

김 미 희 김 선 동 김 승 남 김 재 연
 김 태 년 도 종 환 문 병 호 문 회 상
 민 병 두 민 흥 철 박 성 효 부 좌 현
 서 기 호 신 기 남 신 장 용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인 태 이 목 희 이 종 결
 임 내 현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정 호 준 최 민 희 최 봉 홍

(한명숙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김제남 의원 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143인, 반대 의원 51인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성 완 종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강 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자스민 이 장 우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진 병 현 진 순 옥 진 하 진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의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이 목 희

기권 의원(10인)

김 성 찬 김 제 남 박 주 선 배 재 정
 심 재 철 은 수 미 이 인 영 전 정 희
 한 기 호 홍 문 표

(강기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3인, 기권 의원 10인임)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 ·

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7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영석	윤재옥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윤석
진병현	진순옥	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홍일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

구 결의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0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명재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김무성	김상민	김성찬	김세연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김영우	金永柱	김용태	김을동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김장실	김재원	김제남	김종태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학용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김희정	나성린	류성결	류지영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안종범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박대출	박명재	박상은	박성호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박주선	박창식	백균기	서기호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기준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중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유재중	윤관석	윤영석	윤재옥	심윤조	심재철	안덕수	안종범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이목희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이언주	이예리사	이완영	이용섭	유일호	유재중	윤영석	윤재옥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상일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예리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몽준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진후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원진	조현룡	진영	최경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민희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최원식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반대 의원(58인)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강기정	강동원	김경협	김동철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김민기	김선동	김성주	김영록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김영주	김용익	김춘진	김현미

반대 의원(1인)

안홍준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132인)

강기윤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이윤석	이인영	이찬열	이춘석
이해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전순옥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한 명 숙 홍 영 표

기권 의원(28인)

김기식	김미희	김성곤	김승남
김운덕	김재연	김태년	도종환
문병호	문희상	민홍철	부좌현
신계륜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철수	오병윤
오제세	유기홍	유성엽	이상직
전병헌	전정희	홍의락	홍익표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현룡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윤	강기정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운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명재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반대 의원(11인)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오병윤	우상호	유승희
은수미	이상규	정진후	

기권 의원(14인)

강동원	김기식	김민기	김상민
김영록	남인순	박혜자	서기호
이원욱	전정희	정청래	진선미
홍의락	홍익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1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운덕	김을동	김장실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명재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진병헌	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현룡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김영록	박원석	이한구	정진후
-----	-----	-----	-----

기권 의원(7인)

김기식	서기호	심상정	안민석
은수미	전순옥	홍익표	

(전정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11인, 반대 의원 4인, 기권 의원 7인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현룡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1인)

김기식	김도읍	김제남	김종훈
박원석	서기호	오병윤	은수미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05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반대 의원(6인)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정진후	홍의락		

기권 의원(11인)

김기식	김민기	김성주	김제남
남인순	문재인	문정림	박원석
서기호	은수미	전순옥	

(염동열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5인, 기권 의원 11인임)

○출석 의원(29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우남 김재경 김정록 김진태 김태원 김학용 김현미 김희정 노영민 류성걸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민수 박상은 박영선 박주선 박홍근 백재현 서병수 설영근 신계룡 신장용 심재권 안덕수 안홍준 염동열 우상호 원혜영 유성엽 유은혜 유정복 윤영석 은수미 이노근 이병석 이상직 이완구 이운룡 이재영 김성찬 김영환 김윤덕 김재연 김제남 김진표 김태호 김한길 김현숙 나성린 노옹래 류지영 문희상 민홍철 박대출 박민식 박성호 박완주 박지원 배기운 변재일 서상기 송완창 신기남 신학용 심재철 안민석 안효대 오병윤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윤관석 윤재욱 이강후 이만우 이상규 이석현 이완영 이원욱 이인제 이재우 김영우 김용익 김을동 김재원 김중태 김춘진 김태환 김한표 김희선 남경필 노철래 문병호 민병두 박기춘 박덕흠 박범계 박성효 박원석 박창식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손인춘 신경립 신동우 심상정 심학봉 안종범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기홍 유승우 유일호 윤명희 윤진식 이균현 이목희 이상민 이언주 이용섭 이윤석 이자스민 이재오 김세연 김영주 김용태 김장실 김재윤 김종훈 김태년 김태흠 김희국 남인순 도종환 문재인 박남춘 박명재 박병석 박수현 박인숙 박혜자 백군기 서기호 서용교 송광호 신경민 신의진 심윤조 안규백 안철수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유대운 유승희 유재중 윤상현 윤후덕 이낙연 이미경 이상일 이에리사 이우현 이이재 이장우 이종걸

이종진 이찬열 이학영 이혜찬 임내현 장하나 전하진 정문현 정수성 정청래 조명철 조현룡 진선미 최규성 최원식 하태경 한정애 홍문표 홍일표 황우여 이종훈 이채익 이학재 이헌승 임수경 전병현 전해철 정병국 정우택 정호준 조원진 주승용 진성준 최동익 최재성 한기호 함진규 홍영표 홍종학 황주홍 이주영 이철우 이한구 이현재 장병완 전순옥 정갑윤 정성호 정의화 정희수 조정식 주영순 진영 최민희 최재천 한명숙 홍의락 홍지만 황진하 이진복 이춘석 이한성 인재근 장윤석 전정희 정몽준 정세균 정진후 조경태 조해진 주호영 최경환 최봉홍 추미애 한선교 홍익표 황영철

○개의 시 재석 의원(258인)

강기윤 강석호 경대수 김경협 김기식 김동완 김민기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김재경 김종태 김춘진 김태환 김희정 노옹래 문병두 박남춘 박명재 박상은 박영 강기정 강석훈 권성동 김광립 김기준 김동철 김상민 김성주 김영록 김영환 김윤덕 김재윤 김종훈 김태년 김태흠 김현숙 나성린 노철래 문재인 박대동 박민수 박성호 박완주 강동원 강창일 길정우 김기선 김도읍 김무성 김상희 김세연 김영주 김용태 김장실 김제남 김진표 김태호 김희국 노영민 류지영 문희상 박기춘 박덕흠 박범계 박수현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근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연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率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진병헌 진순옥 진하진 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31인)

김경협 김미희 김민기 김선동
 김성주 김승남 김용익 김춘진
 김한표 남인순 문병호 문재인

민병주 박남춘 박병석 박혜자
 배기운 배재정 서기호 신계륜
 안철수 은수미 이노근 이상규
 임내현 임수경 정성호 정진후
 한명숙 홍문표 홍의락

○청가 의원(4인)

강창희 김정훈 문대성 신성범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임병규
 의사국장 임상수

○출석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서남수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안전행정부제1차관 박찬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여성가족부차관 이복실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	정세균	민주당	2013. 12. 9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	김재원 유기준 이철우 권성동 송영근 김희선 함진규	새누리당	2013. 12. 9
	정세균 문병호 유인태 민병두 안규백 전해철	민주당	
	송호창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	김재원	새누리당	2013. 12. 9
	문병호	민주당	

○의안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정청래·우윤근·백재현·노웅래·
강기정·유성엽·김광진·진성준·최민희·
박민수·배재정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정청래·우윤근·노웅래·강기정·
유성엽·김광진·진성준·최민희·박민수·
배재정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정청래·우윤근·백재현·노웅래·
강기정·유성엽·김광진·최민희·박민수·
배재정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5 이한성·안홍준·유승민·정희수·
김태원·송광호·강길부·이만우·이명수·
강기윤·이이재·조원진 의원 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이한성·안홍준·유승민·정희수·
송광호·강길부·이만우·강기윤·이이재·
김재원·조원진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이완영·이우현·김한표·문정림·
류지영·이채익·이현승·김진태·신동우·
김상민·김학용·김태흠·안종범·홍지만·
강석호·윤진식·윤재옥·권성동 의원 발의)
12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5 서영교·정진후·안홍준·박남춘·
김기식·윤후덕·전순옥·김재윤·최원식·
장하나 의원 발의)

12월 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서영교·전순옥·임수경·정진후·
이낙연·윤후덕·강창일·박남춘·김재윤·
최원식·전해철·장하나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김상민·이한성·유승민·윤명희·

이완영·신의진·손인춘·원유철·이이재·
최봉홍·김태원·이주영·이종훈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5 김광진·장하나·배기운·진성준·
이윤석·정청래·정호준·김기식·서영교·
임수경·한정애·이상직·박민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김춘진·윤관석·김우남·문정림·
전정희·신계륜·남인순·박민수·김성곤·
최동익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5 김춘진·윤관석·김우남·문정림·
전정희·신계륜·남인순·박민수·김성곤·
최동익 의원 발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
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
강창일 의원 발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
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
강창일 의원 발의)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
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
강창일 의원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
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
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
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
강창일 의원 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강창일 의원 발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강창일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강창일 의원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강창일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강창일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강창일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주승용·배기운·김성곤·임내현·노영민·우윤근·이윤석·오제세·최규성·강창일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이미경·윤호중·김용익·박수현·우원식·이학영·김상희·장하나·변재일·남인순·김현미·배기운·이윤석·신장용·강동원·강창일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이학재·이만우·염동열·김세연·주호영·유승우·박인숙·김장실·권은희·손인춘·박명재 의원 발의)

12월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최동익·장하나·황주홍·유승희·한명숙·진성준·전순옥·심재철·임수경·한정애 의원 발의)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문희상·배재정·이찬열·강동원·윤호중·김춘진·백재현·진선미·정성호·김관영·이학영·김태년·김광진·김민기·김성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홍익표·남인순·박범계·백군기·윤후덕·은수미·인재근·정청래·진선미·진성준·최동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강기운·이한성·심재철·이만우·박성호·박성효·김태원·정갑윤·김성찬·권성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원혜영·김진표·민병두·전순옥·김영환·부좌현·배기운·김성곤·홍영표·정청래 의원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강기운·이만우·류지영·김성찬·박명재·박성호·김태원·김기선·김정록·황주홍·이명수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강기운·이한성·이만우·유승우·김태원·문정림·이명수·박성호·김성찬·신성범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강기운·이완영·이한성·이만우·문정림·황주홍·김성찬·권성동·박성효·윤후덕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김영록·송영근·민병주·

이만우 · 박창식 · 김재원 · 최봉홍 · 박인숙 · 이낙연 · 김선동 · 이주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윤명희 · 김영록 · 송영근 · 민병주 · 이만우 · 박창식 · 최봉홍 · 박인숙 · 이운룡 · 정희수 · 김선동 · 이주영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김우남 · 이낙연 · 김영록 · 강동원 · 조정식 · 김동철 · 최규성 · 김승남 · 윤명희 · 김춘진 · 변재일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김우남 · 이낙연 · 김영록 · 강동원 · 조정식 · 김동철 · 김재원 · 최규성 · 김승남 · 윤명희 · 김춘진 · 변재일 · 조경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김우남 · 이낙연 · 김영록 · 강동원 · 조정식 · 김동철 · 최규성 · 윤명희 · 김춘진 · 조경태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정청래 · 우윤근 · 노웅래 · 강기정 · 유성엽 · 김광진 · 최민희 · 박민수 · 배재정 · 정성호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박덕흠 · 송광호 · 김용태 · 박성호 · 김기선 · 강기윤 · 유승우 · 김재원 · 성완중 · 李宰榮 의원 발의)

이상 14건 12월 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강기윤 · 이한성 · 이만우 · 유승우 · 박덕흠 · 박인숙 · 문정림 · 김태원 · 이명수 · 박성호 의원 발의)

12월 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강기윤 · 이만우 · 김성찬 · 박명재 · 박성호 · 김태원 · 김기선 · 김정록 · 황주홍 · 신성범 · 이명수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최동익 · 배기운 · 윤관석 · 이낙연 · 윤호중 · 김용익 · 인재근 · 김춘진 · 부좌현 · 장하나 · 안홍준 의원 발의)

문신사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김춘진 · 변재일 · 윤후덕 · 안규백 · 이종걸 · 김경협 · 김성곤 · 박범계 · 이미경 · 홍문표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김명연 · 주영순 · 신의진 · 류지영 · 강기윤 · 이철우 · 염동열 · 정병국 · 유재중 · 민현주 · 이만우 · 정갑윤 · 여상규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윤명희 · 정의화 · 최봉홍 · 신성범 · 김상민 · 이종훈 · 주호영 · 민현주 · 김현숙 · 권은희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김한표 · 길정우 · 김태원 · 이우현 · 이현승 · 류지영 · 염동열 · 박인숙 · 박성호 · 이재영 · 권성동 · 문대성 · 김세연 · 이강후 · 김재경 이에리사 의원 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우윤근 · 전순옥 · 김우남 · 부좌현 · 노웅래 · 정청래 · 김성곤 · 주승용 · 김제남 · 김영록 의원 발의)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전순옥 · 배기운 · 안규백 · 부좌현 · 박홍근 · 김제남 · 인재근 · 윤후덕 · 박원석 · 정세균 · 정의화 · 박인숙 · 박기춘 · 주호영 · 남경필 · 안철수 · 함진규 · 은수미 · 김동철 · 노영민 · 신학용 · 주승용 · 강창일 · 장병완 · 노웅래 · 박지원 · 양승조 · 김용익 · 도종환 · 김현미 · 김기준 · 이연주 · 송호창 · 홍종학 · 이재오 · 유성엽 · 우원식 · 정호준 · 조경태 · 이상직 · 홍의락 · 신계륜 · 남인순 · 권은희 · 이미경 · 장하나 · 최원식 · 윤관석 · 박남춘 · 정몽준 · 최민희 · 박수현 · 임수경 · 박영선 · 박범계 · 서영교 · 최동익 · 이윤석 · 정성호 · 유승희 · 설훈 · 정청래 · 김상희 · 전정희 · 한정애 · 이춘석 · 최재천 · 김승남 · 이원욱 ·

박완주 · 추미애 · 전병헌 · 정수성 · 홍지만 · 김태년 · 이학영 · 심상정 · 신장용 · 김재윤 · 전해철 · 배재정 · 홍영표 · 조정식 · 백군기 · 이상민 · 문희상 · 박혜자 · 임내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관석 · 윤희중 · 박홍근 · 오영식 · 안민석 · 진성준 · 우원식 · 최민희 · 김관영 · 임수경 · 이목희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김춘진 · 김영록 · 이상직 · 박민수 · 홍문표 · 김관영 · 박범계 · 김운덕 · 최규성 · 김경협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안홍준 · 이만우 · 김성곤 · 정문헌 · 윤재옥 · 신계륜 · 윤영석 · 정의화 · 김우남 · 박인숙 · 문정림 의원 발의)

12월 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민홍철 · 조정식 · 송광호 · 임수경 · 우윤근 · 노영민 · 장병완 · 우원식 · 양승조 · 김상희 · 부좌현 · 이윤석 · 최민희 · 이연주 · 김성곤 의원 발의)

12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안홍준 · 이만우 · 김성곤 · 정문헌 · 윤재옥 · 신계륜 · 정의화 · 김우남 · 박인숙 · 황진하 · 최동익 · 문정림 의원 발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안홍준 · 이만우 · 김성곤 · 정문헌 · 윤재옥 · 신계륜 · 정의화 · 김우남 · 박인숙 · 황진하 · 최동익 · 문정림 의원 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안홍준 · 이만우 · 김성곤 · 정문헌 · 윤재옥 · 신계륜 · 조명철 · 정의화 · 박인숙 · 최동익 · 문정림 의원 발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안홍준 · 이만우 · 김성곤 · 정문헌 ·

윤재옥 · 신계륜 · 정의화 · 김우남 · 박인숙 · 황진하 · 문정림 의원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안홍준 · 이만우 · 윤재옥 · 윤영석 · 조명철 · 정의화 · 김우남 · 심재권 · 박인숙 · 최동익 · 문정림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안홍준 · 이만우 · 김성곤 · 윤재옥 · 정의화 · 심재권 · 박인숙 · 최동익 · 문정림 · 문대성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정청래 · 장하나 · 박민수 · 원혜영 · 임내현 · 홍익표 · 김민기 · 우윤근 · 심재권 · 이상민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정청래 · 장하나 · 박민수 · 원혜영 · 임내현 · 홍익표 · 김민기 · 우윤근 · 우상호 · 심재권 · 이상민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강기윤 · 이낙연 · 김성찬 · 심윤조 · 이한성 · 이명수 · 이주영 · 이만우 · 심재철 · 김태원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 · 이만우 · 김상민 · 김영록 · 신경림 · 최봉홍 · 김춘진 · 정희수 · 김상훈 · 홍문표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 · 정의화 · 최봉홍 · 신성범 · 김상민 · 이종훈 · 주호영 · 민현주 · 김현숙 · 권은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강기윤 · 이만우 · 이낙연 · 김성찬 · 이명수 · 박성효 · 김기선 · 박인숙 · 이원욱 · 박성효 · 이주영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강기윤·이만우·이명수·김성찬·김태원·박성호·박성효·김기선·박인숙·황영철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강기윤·이만우·김태원·박성호·김성찬·박성효·김기선·이명수·박인숙·황영철 의원 발의)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우윤근·이원욱·김성곤·김우남·정청래·주승용·노영민·김영록·강기정·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김영록·송영근·민병주·이만우·박창식·최봉홍·박인숙·이운룡·신성범·이주영·김선동 의원 발의)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김춘진·윤관석·김우남·이종걸·문정림·박민수·한정애·남인순·김윤덕·김성곤 의원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강석훈·김춘진·김영록·김한표·정문헌·최봉홍·金永柱·홍지만·정희수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강석훈·김춘진·김영록·김한표·정문헌·최봉홍·金永柱·홍지만·정희수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김영록·김우남·송영근·민병주·이만우·박창식·최봉홍·이낙연·이운룡·김선동·이주영 의원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강석훈·김춘진·김영록·김한표·정문헌·최봉홍·金永柱·홍지만·정희수 의원 발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김영록·송영근·이만우·박창식·최봉홍·박인숙·이운룡·신성범·김춘진·김선동·이주영 의원 발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김영록·김우남·송영근·민병주·이만우·박창식·최봉홍·이낙연·이운룡·김선동·이주영 의원 발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윤명희·강석훈·김춘진·김영록·김한표·정문헌·최봉홍·金永柱·홍지만·정희수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김우남·이낙연·김영록·강동원·조정식·김동철·최규성·윤명희·김춘진·변재일·조경태 의원 발의)

농어업회의소법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박민수·김영록·김춘진·김윤덕·정성호·문재인·백재현·김승남·우윤근·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10건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정청래·장하나·박민수·원혜영·홍익표·임내현·김민기·우윤근·심재권·이상민 의원 발의)

12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김우남·김영록·강동원·조정식·김동철·김재원·최규성·윤명희·김춘진·변재일·조경태·김종태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김광진·박남춘·진성준·김성곤·김우남·김태년·박민수·문병호·배기운·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김기준·장하나·이원욱·김영환·

정청래 · 이낙연 · 이상직 · 한정애 · 배기운 · 이종걸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안민석 · 배기운 · 강기정 · 이낙연 · 김우남 · 박주선 · 조정식 · 이종걸 · 김현미 · 김성곤 · 강창일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안민석 · 배기운 · 강기정 · 김우남 · 박주선 · 조정식 · 이종걸 · 김현미 · 김성곤 · 강창일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이학재 · 김장실 · 주호영 · 강은희 · 이에리사 · 박인숙 · 염동열 · 김희정 · 박창식 · 김세연 · 박성호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김장실 · 박창식 · 강은희 · 이에리사 · 주호영 · 이학재 · 김희정 · 박인숙 · 염동열 · 김세연 · 박성호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양승조 · 이낙연 · 박수현 · 김용익 · 백재현 · 박홍근 · 유기홍 · 한명숙 · 배기운 · 변재일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박병석 · 박수현 · 이원욱 · 장하나 · 이낙연 · 박남춘 · 김기준 · 정청래 · 박민수 · 윤관석 · 김성곤 · 김재윤 · 원혜영 · 민홍철 의원 발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강기운 · 권성동 · 김기선 · 김성찬 · 김태원 · 박성호 · 박성효 · 신성범 · 이낙연 · 조원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안민석 · 배기운 · 강기정 · 박주선 · 조정식 · 이종걸 · 김현미 · 김성곤 · 윤호중 · 강창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이낙연 · 김영환 · 김성곤 · 문정림 · 배기운 · 김현미 · 박인숙 · 박민수 · 염동열 · 서영교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이노근 · 이명수 · 김춘진 · 정희수 · 이현재 · 함진규 · 김태원 · 김진태 · 박상은 · 조명철 · 김한표 · 이우현 · 이에리사 · 염동열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손인춘 · 현영희 · 홍문종 · 이만우 · 정희수 · 박인숙 · 김종태 · 김성찬 · 이인제 · 김장실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윤명희 · 이만우 · 김상민 · 김우남 · 김종태 · 김재원 · 김영록 · 신경림 · 송영근 · 최봉홍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유성엽 · 최원식 · 장하나 · 정진후 · 정청래 · 심재철 · 전순옥 · 민홍철 · 배기운 · 김재윤 · 이원욱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양승조 · 이낙연 · 박수현 · 강기정 · 김용익 · 백재현 · 박홍근 · 유기홍 · 한명숙 · 배기운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정청래 · 박민수 · 임내현 · 홍익표 · 우윤근 · 배기운 · 이춘석 · 이상민 · 전순옥 · 이낙연 · 김성곤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정청래 · 박민수 · 임내현 · 홍익표 · 우윤근 · 배기운 · 이춘석 · 이상민 · 전순옥 · 이낙연 · 김성곤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정청래·박민수·임내현·홍익표·
우윤근·배기운·이춘석·이상민·전순옥·
이낙연·김성곤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정청래·박민수·임내현·홍익표·
우윤근·배기운·이춘석·이상민·전순옥·
이낙연·김성곤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박민식·이만우·이종걸·정희수·
장윤석·민병두·남경필·유승우·박대동·
송광호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박민식·이만우·이종걸·정희수·
장윤석·민병두·남경필·유승우·박대동·
송광호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정청래·박민수·홍익표·임내현·
우윤근·배기운·이춘석·이상민·이낙연·
전순옥·김성곤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9 남인순·이원욱·김상희·장하나·
김춘진·김재윤·이학영·유기홍·전순옥·
이미경·최재성·한정애·백재현·전정희·
박민수·이낙연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9 이원욱·민병두·김경협·배기운·
진성준·부좌현·김윤덕·임수경·이목희·
이학영·장하나·송광호 의원 발의)

보완대체의료 진흥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김춘진·이윤석·홍문표·김성곤·
하태경·장윤석·김승남·김영록·이한구·
최규성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강기운·김성찬·이명수·김태원·
김기선·박성호·조원진·정갑윤·이낙연·

이우현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9 강기운·권성동·김기선·김성찬·
김태원·박성호·박인숙·이낙연·이만우·
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남인순·이원욱·김상희·장하나·
김춘진·김재윤·이학영·유기홍·전순옥·
이미경·최재성·한정애·백재현·전정희·
박민수·이낙연 의원 발의)

12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김광진·장하나·배기운·진성준·
이윤석·정호준·김기식·박홍근·백재현·
이학영·김성곤·정청래·김미희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9 김광진·장하나·배기운·진성준·
이윤석·정호준·김기식·박홍근·백재현·
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양승조·이낙연·박수현·강기정·
김용익·백재현·박홍근·유기홍·한명숙·
배기운 의원 발의)

12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결의안

(2013. 12. 5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 12. 9 정보위원장 제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

(2013. 12. 9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제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2013. 12. 9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위문금 각출의 건

(2013. 12. 10 의장 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12. 10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13. 12. 1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12. 10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13. 12. 10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12. 10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12. 7. 4 문병호·윤후덕·박남춘·김성주·유대운·이낙연·배기운·홍종학·임내현·윤관석·김관영·민홍철·김동철·심재권·정성호·김광진·정청래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용 의원 대표 발의)

(2012. 7. 4 신장용·김성주·이낙연·김영록·변재일·이윤석·백재현·김성곤·배기운·우원식·진성준·정성호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0 김태원·정희수·권은희·신동우·이종진·윤영석·김동완·박성호·강기윤·홍일표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8 김세연·김상훈·李宰榮·정갑윤·김현숙·이노근·김태호·김진태·이완영·김태원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3. 7. 2 정성호·배기운·이낙연·노웅래·유성엽·최재성·홍종학·김광진·박민수·김현미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7 류성걸·김영우·함진규·박대출·김종대·김광림·유승우·안중범·이현재·김희국·안효대·이진복·김성찬·김도읍·이군현·정수성·이장우·염동열·민병주·이만우·나성린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18 김춘진·이상직·홍문표·진선미·김윤덕·김영록·최규성·김승남·배기운·윤명희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6 김현미·장병완·이찬열·홍종학·설훈·박남춘·백재현·문희상·김민기·김현·정성호·문재인·이인영·이용섭·이낙연·조정식·윤호중·최재성·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2013. 1. 28 박혜자·박남춘·김영록·남인순·정성호·임수경·이석현·심재권·김민기·조경태·도종환·이언주 의원 발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3. 3. 5 유은혜·박홍근·김현미·안민석·설훈·양승조·유성엽·강기정·인재근·정진후·김용익·김태년·이인영·유기홍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2013. 1. 28 박혜자·박남춘·김영록·남인순·임수경·이석현·심재권·김민기·정성호·조경태·도종환·이언주·이윤석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3. 2. 4 김세연·박성호·김태원·송영근·유승우·서상기·김우남·황우여·이낙연·박인숙·이에리사 의원 발의)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

(2013. 10. 7 안민석·정희수·배재정·배기운·이만우·김제남·한정애·오영식·전정희·박수현·윤관석·진성준·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4 민병주·이철우·김태원·정두언·서상기·이병석·조원진·김세연·강은희·이에리사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1. 21 정희수·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金永柱·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12. 9. 20 류성걸·박성호·김희국·홍지만·김세연·여상규·정희수·박대동·박상은·심학봉·김명연·이학재·최봉홍·이재영·윤재옥·염동열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김재윤·김성곤·민홍철·박남춘·배기운·윤관석·이상민·전정희·정성호·홍종학 의원 발의)

문화기본법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2013. 5. 22 김장실·이학재·윤관석·이한성·정세균·김세연·정의화·서상기·이만우·서용교·문정림·정병국·윤진식·이재오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9 이군현·김종훈·김태호·김한표·서상기·신경림·신성범·이만우·이완영·이현재·홍일표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박성호·김세연·이한성·최봉홍·김태원·강기윤·김정록·박인숙·서상기·

이에리사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 발의)

(2013. 3. 18 신계륜·배기운·최동익·이종훈·전해철·최봉홍·이만우·김태원·박인숙·정청래·민홍철·홍종학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13. 6. 4 김태년·김현·박홍근·우원식·유기홍·유은혜·이용섭·정호준·최동익·홍영표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7. 4 박인숙·윤재옥·한선교·민홍철·황주홍·민병주·이에리사·염동열·윤명희·이자스민·송영근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6 김세연·염동열·이낙연·서영교·윤관석·강은희·하태경·김진태·권은희·정두언·한기호·김재원·김우남·김상민·이에리사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3. 6. 3. 염동열·김세연·김희정·홍지만·심학봉·김장실·서용교·김정록·김한표·金永柱·성완중·박창식·서상기 의원 발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3. 3. 5 유은혜·박홍근·김현미·안민석·설훈·양승조·유성엽·강기정·인재근·정진후·김용익·김태년·이인영·유기홍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31 문정림·이명수·이인제·문대성·홍지만·권성동·金永柱·이낙연·김현숙·안홍준·이자스민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1 박인숙·서상기·한선교·정희수·이명수·김세연·유기홍·남인순·유승민·김태호·이자스민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6. 11 정부 제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6 이상민 · 유성엽 · 배기운 · 김춘진 · 김현미 · 박홍근 · 박수현 · 정진후 · 이연주 · 안민석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2. 9. 21 윤관석 · 전병헌 · 유대운 · 김세연 · 윤후덕 · 박완주 · 김성곤 · 이상직 · 배재정 · 김관영 · 홍익표 · 우윤근 · 유승희 · 김제남 · 노영민 · 배기운 · 장하나 · 인재근 · 유성엽 · 김미희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김윤덕 · 유성엽 · 신경민 · 이춘석 · 이상직 · 최민희 · 배기운 · 김관영 · 윤관석 · 김춘진 · 유승희 · 김성주 · 진성준 · 최규성 · 배재정 · 홍종학 의원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 발의)

(2012. 8. 14 박창식 · 박성호 · 김상민 · 최봉홍 · 정갑윤 · 박민식 · 민현주 · 한선교 · 송광호 · 강은희 의원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1 길정우 · 유정복 · 박인숙 · 박대출 · 박덕흠 · 김장실 · 정성호 · 이한성 · 권성동 · 이종진 · 강기윤 · 김을동 · 유승우 · 남경필 의원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1. 14 최민희 · 강동원 · 김성곤 · 김영주 · 김현미 · 노웅래 · 노회찬 · 박수현 · 박완주 · 박원석 · 배기운 · 배재정 · 신경민 · 원혜영 · 유성엽 · 유인태 · 이낙연 · 이상민 · 이인영 · 이한성 · 장병완 · 전순옥 · 전정희 · 전해철 · 정청래 · 조정식 · 홍종학 의원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4 이학재 · 강동원 · 손인춘 · 권은희 · 김희정 · 김장실 · 박성호 · 주호영 · 김세연 · 강은희 의원 발의)

(이상 1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8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1. 21 정희수 · 함진규 · 박범계 · 강은희 · 권성동 · 권은희 · 金永柱 · 박민식 · 여상규 · 이진복 · 이철우 · 홍일표 · 김관영 · 김성곤 · 서영교 · 원혜영 · 조정식 · 황주홍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9. 16 정부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3. 10. 30 황영철 · 金永柱 · 박성효 · 박덕흠 · 이재오 · 윤재옥 · 김기선 · 한기호 · 이운룡 · 김진태 · 나성린 · 이이재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안전행정위원장 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 24 배기운 · 김성주 · 주승용 · 심재권 · 강기정 · 김영록 · 김우남 · 정성호 · 양승조 · 최규성 의원 발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3. 21 윤명희 · 고희선 · 이상일 · 송영근 · 이만우 · 최봉홍 · 황영철 · 이에리사 · 김영록 · 김을동 · 강은희 · 이노근 · 김현숙 · 李宰榮 · 박인숙 · 민병주 · 황주홍 · 김춘진 · 김희정 · 이자스민 · 최규성 의원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3. 5. 14 경대수 · 황영철 · 이한성 · 송광호 · 金永柱 · 문정림 · 박상은 · 김동완 · 류지영 · 김진태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3 노영민 · 주승용 · 최규성 · 김진표 · 홍의락 · 윤후덕 · 김성주 · 김관영 · 오영식 · 우윤근 의원 발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8 전해철 · 최원식 · 배기운 · 한명숙 · 백재현 · 최재성 · 박남춘 · 김태년 · 이춘석 · 박영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보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2. 9. 25 한정애 · 김관영 · 노영민 · 박기춘 · 서영교 · 윤관석 · 은수미 · 진성준 · 장하나 · 홍영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 31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3. 25 이명수 · 박민식 · 민현주 · 권은희 · 이우현 · 김세연 · 이운룡 · 박원석 · 김을동 · 조명철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3. 22 이노근 · 이명수 · 이이재 · 이장우 · 함진규 · 이현승 · 김태흠 · 김한표 · 이완영 · 김희국 · 박인숙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3. 3. 7 이이재 · 이명수 · 이노근 · 이종진 · 이현승 · 함진규 · 강석호 · 안효대 · 김을동 · 정문헌 · 유승우 · 이윤석 · 이종훈 · 홍문중 · 조현룡 · 박인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3. 4. 3 이이재 · 이종훈 · 유승우 · 정문헌 · 김상민 · 남경필 · 김진태 · 한기호 · 박인숙 · 김형태 · 김태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4. 17 김태원 · 황영철 · 유승우 · 정희수 · 김재원 · 이만우 · 이명수 · 박성호 · 강기윤 · 정우택 · 이에리사 · 안홍준 · 박인숙 · 이상일 · 조명철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2. 6. 8 박기춘 · 오제세 · 김성곤 · 정세균 · 주승용 · 김우남 · 이윤석 · 김민기 · 최규성 · 윤호중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2. 8. 2 이현재 · 정희수 · 김정록 · 유승우 · 김명연 · 박상은 · 김태원 · 이재영 · 윤진식 · 이재균 · 김기선 · 이장우 · 박대출 · 성완중 · 함진규 · 손인춘 · 최경환 · 홍문중 · 이종진 · 이완영 · 김장실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2. 9. 25 이노근 · 정희수 · 이명수 · 이한성 · 정문헌 · 안홍준 · 김세연 · 김성주 · 유재중 · 김동완 · 이종진 · 金永柱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8 정부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3. 1. 9 이철우 · 권은희 · 한기호 · 조현룡 · 이재영 · 함진규 · 정희수 · 홍문표 · 문대성 · 박대동 · 김근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4. 8 이노근 · 조현룡 · 권은희 · 이완영 · 문대성 · 하태경 · 신동우 · 김상훈 · 신성범 · 김희국 · 황진하 · 강길부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3. 3. 7 이이재 · 이명수 · 이노근 · 이종진 · 이현승 · 함진규 · 강석호 · 안효대 · 김을동 · 정문헌 · 유승우 · 이윤석 · 이종훈 · 홍문중 · 조현룡 · 박인숙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3. 3. 28 전해철 · 최원식 · 배기운 · 한명숙 · 백재현 · 최재성 · 박남춘 · 김태년 · 이춘석 · 박영선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17 김상희 · 박홍근 · 박수현 · 이미경 · 김영주 · 우원식 · 남인순 · 장하나 · 김현미 · 유기홍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이이재 · 김희국 · 권은희 · 민현주 · 李宰榮 · 이종훈 · 박인숙 · 김중훈 · 김동완 · 강석훈 · 이강후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5. 9 이노근 · 이현재 · 김태원 · 이명수 · 조명철 · 이만우 · 박성호 · 김기현 · 박인숙 · 이학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5. 10 이명수 · 이현승 · 강석호 · 이노근 ·

손인춘 · 함진규 · 박상은 · 홍문중 · 김을동 · 문병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5. 14 정희수 · 이명수 · 김한표 · 심학봉 · 정수성 · 윤명희 · 주영순 · 노철래 · 김상훈 · 김태환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5. 21 김태원 · 정희수 · 이낙연 · 이한성 · 안홍준 · 김기현 · 조명철 · 이에리사 · 문대성 · 강기윤 · 문정림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3. 5. 30 김경협 · 이윤석 · 강은희 · 이미경 · 홍의락 · 한명숙 · 한정애 · 박주선 · 심상정 · 김상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6. 3 김태원 · 박성호 · 이노근 · 이명수 · 이낙연 · 정우택 · 김종태 · 김동완 · 정희수 · 강기윤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13. 6. 3 이현승 · 권은희 · 김기선 · 김을동 · 신의진 · 김명연 · 유승우 · 강은희 · 김태흠 · 이진복 · 박창식 · 이낙연 · 김세연 · 이채익 · 조현룡 · 안효대 · 강석호 · 김한표 · 윤재옥 · 조해진 · 윤상현 · 이명수 · 이노근 · 신장용 · 김도읍 · 김장실 · 신성범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3. 6. 5 심재철 · 이주영 · 박상은 · 김상훈 · 함진규 · 김도읍 · 김태원 · 강석호 · 조현룡 · 이종훈 · 손인춘 · 나성린 · 신동우 · 정문현 · 이에리사 · 여상규 · 정우택 · 박성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6. 13 주승용 · 강창일 · 김영록 · 배기운 · 임내현 · 박수현 · 우윤근 · 이춘석 · 황주홍 · 강기정 · 이윤석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함진규 · 조현룡 · 김관영 · 김태원 · 이노근 · 이명수 · 오병윤 · 박상은 · 이군현 · 김학용 · 이재영 · 이우현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완중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성완중 · 金永柱 · 이낙연 · 정의화 · 김태흠 · 정호준 · 주영순 · 홍문표 · 박성호 · 손인춘 · 문정림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3. 7. 15 박병석 · 이상민 · 박민수 · 신경민 · 윤희중 · 김성곤 · 추미애 · 홍종학 · 민홍철 ·

원혜영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3. 7. 24 강기윤 · 이만우 · 김기선 · 이명수 · 유승우 · 金永柱 · 김태원 · 박성호 · 신성범 · 권성동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8. 9 김춘진 · 김우남 · 이학재 · 김동철 · 윤관석 · 김재원 · 윤후덕 · 박완주 · 황주홍 · 김성곤 · 노웅래 · 유성엽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윤후덕 · 배기운 · 정호준 · 유성엽 · 전순옥 · 박지원 · 김춘진 · 최원식 · 남인순 · 이찬열 · 신경민 · 우원식 · 민홍철 · 정진후 · 김성곤 · 박인숙 · 이윤석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3. 9. 10 윤후덕 · 부좌현 · 박지원 · 윤관석 · 이상직 · 최원식 · 신장용 · 김성곤 · 배기운 · 전순옥 · 문재인 · 유성엽 · 박수현 · 이상민 · 김광진 · 김태호 의원 발의)

(이상 2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1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0 김제남 · 전순옥 · 배재정 · 심상정 · 정진후 · 강동원 · 박원석 · 서기호 · 이미경 · 홍의락 의원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6. 11 최민희 · 윤관석 · 김성곤 · 박지원 · 민홍철 · 박민수 · 유승희 · 김승남 · 추미애 · 배기운 · 전정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 발의)

(2013. 2. 27 김제남 · 남인순 · 배기운 · 강동원 · 심상정 · 서기호 · 정진후 · 박원석 · 권은희 · 김성곤 의원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3 길정우 · 이현재 · 정문현 · 이우현 · 이학재 · 안홍준 · 이한성 · 류지영 · 강동원 · 유승희 · 김기현 · 유승우 · 전병헌 · 김성곤 · 김희정 · 조명철 · 이자스민 · 백재현 · 김현숙 ·

강은희 · 인재근 · 전정희 · 김제남 · 유성엽 · 김상희 · 이에리사 · 김진태 의원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13. 8. 20 김상훈 · 정의화 · 유승우 · 김정록 · 민병주 · 신성범 · 이만우 · 이채익 · 송영근 · 박성호 · 정희수 · 김세연 · 이한성 · 길정우 · 문정림 의원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3. 8. 2 김태원 · 이만우 · 윤명희 · 이명수 · 정희수 · 이노근 · 이한성 · 박성호 · 김동완 · 강기윤 의원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9. 13 강은희 · 김세연 · 김상훈 · 이강후 · 김현숙 · 김희정 · 이우현 · 김태흠 · 홍지만 · 이노근 · 박성호 의원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

(2013. 9. 16 신경림 · 안홍준 · 정문헌 · 김세연 · 전하진 · 주영순 · 유재중 · 김정록 · 류지영 · 김장실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제321회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	2013년 12월 1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2014년도 예산안 등
요 구 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 외 280인

(2013. 12. 6)